

# KCGS Report

제14권 1호 | 통권 제169호  
2024.1.



한국ESG기준원

## KCGS Report 제14권 1호

발행일: 2024년 1월 31일

발행인: 심인숙

발행처: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http://www.cgs.or.kr)

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 KCGS Report

제14권 1호 | 2024. 1.

## ● ESG 동향

국내 상장기업의 준법통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준법지원인 제도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	2
국내 상장회사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현황(2)	
- 이사회의 경력 및 역량 전문성 중심으로 -	15

## ● Global News

1.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최신 변동사항 및 시사점	30
2. EU 금융당국, 금융상품 공시규제에 새로운 사회적 지표 제안	33

# 국내 상장기업의 준법통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준법지원인 제도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

김희경\*

- ▶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여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여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 ▶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국내 상장기업 중 10곳 중 4곳이 준법지원인을 미선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 중에서도 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준법통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 ▶ 효과적인 준법통제시스템은 준법경영을 실현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확립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는 수단임. 따라서 준법지원인 제도가 현 상황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기업 내부에서도 준법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 및 효율적으로 준법통제활동을 수행할 것이 권고됨

---

## 들어가며

### • 검토목적

- 상장기업에 대한 준법통제 내재화를 목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이 논의됨. 이에 따라, 2012년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sup>1)</sup>
- 상법상 준법지원인 선임은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의무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선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이를 도외시하는 기업이 존재함
- 2012년 4월 15일 준법지원인 제도 시행 약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준법지원인 제도 유명무실화’라는 부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음<sup>2)3)</sup>

---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연구원, hk.kim@cgs.or.kr

1) 상법 제542조의13, 2011년 4월 14일 개정 상법이 공포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됨

2) 장대현, “ESG 초석 K-컴플라이언스를 꿈꾸며...”, 더스쿠프, 2021년 7월 8일,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29>

3) 김동수, “준법지원인 제도 ‘유명무실’...상장 공기업들 선임 ‘외면.’”, 뉴스워치, 2023년 11월 6일, <https://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65747>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준법지원인 제도 운영 실태를 다각화로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제도 구축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함. 또한,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준법통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향후 개선점을 논하고자 함

#### • 검토대상 및 범위

- 본 보고서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를 지는 상장기업 437개사를 주요 검토대상으로 하며, 2022년 12월 말일 기준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기업 현황을 바탕으로 함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818개사, 코스닥 상장기업은 1,579개사이며, 이 중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은 전체 상장기업에서 i)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상장사<sup>4)</sup> 및 ii) 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기업<sup>5)</sup>을 제외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351개사 및 코스닥 상장기업 86개사임

#### • 한계

- 본 보고서의 검토 내용 및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함
  - 검토 자료는 기업이 스스로 공시한 사업보고서 내용에 의존하므로, 기업이 공시서류를 불성실 기재하였거나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여 작성한 경우 기업의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료 조사 시기가 12월 결산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전이므로, 2024년 현재 기업의 경영 활동에 관한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

###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배경

- 미국에서는 20세기 초 일찍이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함. 내부통제는 재무 및 회계 분야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미국공인회계사협회를 비롯한 5개 민간기관이 참여한 COSO 보고서 발표 이후 그 개념 및 체제가 더욱 발전하게 됨<sup>6)</sup>
  - 「1992년 COSO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통제는 ① 사업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② 재무보고의 신뢰성(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③ 관련 법규의 준수(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절차를 뜻함<sup>7)</sup>

4) 기업별 결산월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반영함

5) 김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회사 목록 참고

6) 김강수,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중앙법학」 제13권 2호 (2011), 288면

7) COSO(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 이후 COSO는 「2004년 COSO 보고서」에서 내부통제 개념을 보다 확대한 전사적 위험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모형을 발표함.<sup>8)</sup> 이는 기업 목적의 달성과 영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내·외부 전반에 걸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위험의 분석과 대응방안 수립, 위험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을 포함한 개념임<sup>9)</sup>
-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sup>10)</sup> 「1992년 COSO 보고서」의 개념을 토대로, 2000년대에 들어서 회계와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각종 법규 준수 확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됨<sup>11)</sup>
- 이후 금융기관에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상장기업에는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하여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됨
  - 준법감시인 제도와 달리 준법지원인 제도는 ‘내부통제’ 대신 ‘준법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법규 준수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특징이 있으며, 총괄 담당자의 자격요건 및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에서 여러 차이가 있음
  -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17호),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음

〈표 1〉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 제도 비교

구분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근거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시행 연도	2000년	2012년
대상	금융회사	상장회사
업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보고	감사(위원회)	이사회
임기	2년 이상	3년
자격요건	변호사 또는 회계사, 금융 분야 교수, 금융기관 경력 등	변호사, 법률 분야 교수, 상장회사 법무 부서 경력 등
미선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없음

\* 출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각 규정, KCGS

8) COSO(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Internal Control) - 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

9) 송호신, "기업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3호 (2014), 1486면

10) 정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내부통제", 「법학연구」 제43집 (2011), 283면

11) 박선종, "개정상법상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 저스티스 (2011), 238-240면

## 국내 상장사의 준법지원인 운영 현황

- 법적 의무에 따른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
  -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른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이하 ‘의무 기업’이라 한다) 437개사 중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이하 ‘선임 기업’이라 한다)이 260개사(59.5%), 선임하지 않은 기업이 177개사(40.5%)로 집계됨
  - 유가증권 의무기업 351개사 중 230개사(65.5%)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으며, 코스닥 의무기업 86개사 중 30개사(34.9%)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함. 유가증권 기업의 선임률이 코스닥 기업의 선임률보다 약 30% 높음
  -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대상 상장기업 10개사 중 4개사는 상법상 의무를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의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	유가증권+코스닥		유가증권		코스닥	
	기업 수 (개사)	비율(%)	기업 수 (개사)	비율(%)	기업 수 (개사)	비율(%)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260	59.5	230	65.5	30	34.9
준법지원인 미선임 기업	177	40.5	121	34.5	56	65.1
합계	437	100	351	100	86	100

\* 출처: DART, KCGS

- 상장회사협의회 금융감독원 실태조사 결과(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제도 시행 연도인 2012년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은 172개사<sup>12)</sup>임. 이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115개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은 69개사(60%), 미선임 기업은 46개사(40%)로 나타남. 상법상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1조 원 이상 기업에서 5천억 원 이상 기업으로 상향된 2014년 이후에는 실태조사 응답 기업의 준법지원인 선임률이 10.5% 감소함
- 준법지원인 제도 시행 초기와 제도 시행 후 약 10여 년이 지난 현재를 비교했을 때 준법지원인 선임률이 각각 60%(2012), 49.5%(2014), 60%(2015), 59.5%(2022)로, 과거 실태조사 당시 미응답률을 감안하더라도 준법지원인 선임률이 대동소이한 모습임. 또한, 의무기업이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전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는 없음

12) 개정 상법 시행 당시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인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상장기업 기준

〈표 3〉 준법지원인 제도 시행 초기의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조사 연도		2012년 4월 (1조 원 이상)		2014년 4월		2015년 4월	
		유가증권+코스닥		유가증권+코스닥		유가증권+코스닥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		기업 수 (개사)	비율(%)	기업 수 (개사)	비율(%)	기업 수 (개사)	비율(%)
응답 기업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69	60	108	49.5	123	60
	준법지원인 미선임 기업	46	40	110	50.5	82	40
합계		115	100	218	100	205	100
미응답 기업		57	33.1	88	28.8	99	32.6
총계		172	100	306	100	304	100

\* 출처: 상장사협의회, 금융감독원 실태조사 결과(민병두 의원실)

- 한편,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과 별개로, 준법지원인 선임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이 12개사로 조사됨
- 유가증권 상장기업 9개사 및 코스닥 상장기업 3개사가 자발적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준법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적 분쟁 발생에 따른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

- 상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도록 한 가장 큰 취지는 회사 내부에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사전에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임.<sup>13)</sup> 이와 관련하여 DART 소송제기 공시 집계 결과, 지난 10년 간(2012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 있는 의무기업은 87개사이며, 이 중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은 65개사(74.7%),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은 22개사(25.3%)임
- 법적 분쟁 발생 기업 중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은 총 65개사로 74.7%의 높은 선임률을 보인 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 없는 기업 중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은 195개사로 55.7%의 의무기업의 평균 선임률인 59.5%을 약간 하회하는 선임률을 보임
  - 생각건대, 법적 위험을 사전 예방한다는 제도의 취지상 사후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기보다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준법통제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준법지원인을 선임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감소하였는지 또는 법적 분쟁 발생 기업이 감소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준법지원인 선임 이후의 통계 자료가 빈약하여 이에 관한 향후 귀추가 주목됨

13) 정준우, "준법지원인의 선임에 관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9권 3호 (2015), 224면

〈표 4〉 2012년~2021년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의 소송 발생 여부

	-	유가증권+코스닥		유가증권		코스닥		
		기업 수 (개사)	비율(%)	기업 수 (개사)	비율 (%)	기업 수 (개사)	비율 (%)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	법적 분쟁 발생 기업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65	74.7	57	79.2	8	53.3
		준법지원인 미선임 기업	22	25.3	15	20.8	7	46.7
		합계	87	100	72	100	15	100
	법적 분쟁 미발생 기업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195	55.7	173	62	22	31
		준법지원인 미선임 기업	155	44.3	106	38	49	69
		합계	350	100	279	100	71	100

출처: DART, KCGS

#### •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

- 상법 제542조의13 제5항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데 있어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따라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260개사 중 공시 현황을 통해 준법지원인 자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기업은 237개사(91.2%)임
-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의 각 요건에 따른 선임 비율을 살펴보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1호) 65.8%,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법률학 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3호) 25.4%로 나타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호)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준법지원인이 각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직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자격 없음 기타'로 처리하였으며, 전체 의무기업 중 23개사(8.8%)가 이에 해당함

〈표 5〉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의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현황<sup>14)</sup>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유가증권+코스닥		유가증권		코스닥	
	기업 수 (개사)	비율(%)	기업 수 (개사)	비율(%)	기업 수 (개사)	비율(%)
변호사(1호)	171	65.8	151	65.7	20	66.7
법학 조교수 5년(2호)	0	0	0	0	0	0
법무부서 경력 10년 또는 5년(3호)	66	25.4	59	25.7	7	23.3
자격 없음 기타	23	8.8	20	8.7	3	10
합계	260	100	230	100	30	100

\*출처: DART, KCGS

• 준법지원인의 직위

- 준법지원인의 직위와 관련하여,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260개사 중 준법지원인이 상법상 임원인 상장기업은 105개사(40.4%), 임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그룹장 이상(팀장, 부장, 실장 등을 포함)인 상장기업은 76개사(29.6%)로 나타남
- 준법지원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한 기업이 유가증권 상장기업에서 3건 조사되었으며, 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한 기업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각각 95건 및 7건 조사됨.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바 그룹장 이상을 담당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70%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법지원인의 직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공식 현황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타'로 처리하였으며, 전체 의무기업 중 79개사(30%)가 이에 해당함

〈표 6〉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의 임원 여부 및 직위 현황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유가증권+코스닥		유가증권		코스닥	
	기업 수 (개사)	비율(%)	기업 수 (개사)	비율(%)	기업 수 (개사)	비율(%)
등기임원	3	1.2	3	1.3	0	0
미등기임원	102	39.2	95	41.3	7	23.3
그룹장 이상	76	29.6	63	27.8	13	43.3
기타	79	30	69	29.6	10	33.3
합계	260	100	230	100	30	100

\*출처: DART, KCGS

14) 각 호의 요건 순차로 검토함. 즉, 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2호 또는 3호 요건 미검토

□ 한편,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sup>15)</sup>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과 겸직할 수 없으며(제8조), 준법 관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음(제11조). 조사 과정에서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중 상기의 겸직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준법지원조직 설치 여부

- 상법상 준법지원인 선임 외에 준법지원조직 설치의 필수가 아니나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의하면,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에 관하여도 기술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제7-2-3조). 이에 따라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260개사 중 준법지원조직을 설치한 기업은 247개사(95%)이며, 준법지원조직이 없는 기업은 13개사(5%)로 파악됨. 또한, 조직의 명칭이 ‘준법지원’, ‘법무’, 또는 ‘컴플라이언스’인 경우가 8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유가증권 기업 230개사 중 220개사가 준법지원조직을 공시하였고, 코스닥 기업 30개사 중 27개사가 준법지원조직을 공시한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이 준법지원조직을 두어 준법지원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준법지원조직의 명칭이 ‘준법지원’, ‘법무’, 또는 ‘컴플라이언스’가 아닌 경우 ‘기타’로 기재하였으며, 전체 의무기업 중 27개사(10,4%)가 이에 해당함. ‘기타’의 예로 ‘윤리경영’, ‘관리’, ‘인사’, ‘재무’, ‘ESG’, ‘RM’ 등이 있음

〈표 7〉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의 준법지원조직 설치 현황<sup>16)</sup>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유가증권+코스닥		유가증권		코스닥	
	기업 수 (개사)	비율(%)	기업 수 (개사)	비율(%)	기업 수 (개사)	비율(%)
준법지원	51	19.6	45	19.6	6	20
법무	135	51.9	118	51.3	17	56.7
컴플라이언스	34	13.1	31	13.5	3	10
기타	27	10.4	26	11.3	1	3.3
준법지원조직 없음	13	5	10	4.3	3	10
합계	260	100	230	100	30	100

\*출처: DART, KCGS

15) 법무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2012년에 제정 및 2019년에 개정하여 배포한 준법지원인 업무수행 지침서  
 16) 조직이 중복 집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조직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준법지원’, ‘법무’, ‘컴플라이언스’ 순차로 각 명칭에 근접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한편, 감사지원조직과 준법지원조직이 중복되는 사례가 소수 발견됨.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에서는 “상법상 이사회와 감사는 상호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므로 준법지원인과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도 없고, 준법지원인이 감사의 하부조직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여 각각의 역할을 구별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준법지원인이 감사 및 감사위원을 겸직하지 않는 것 외에도, 감사지원 조직과 준법지원조직이 중복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준법지원인의 활동 내역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의하면, 사업보고서에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준법지원인 활동 내역을 공시한 의무기업은 225개사(86.5%), 공시하지 않은 의무기업은 35개사(13.5%)임
- 준법지원인의 세부 활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활동 내역을 15개 초과하여 공시(중상 수준 이상)한 전체 의무기업이 41개사(15.8%)로 나타남. 반면, 활동 내역을 5개 이하로 공시(하 수준 이하)한 전체 의무기업이 122개사(46.9%)로 집계됨

〈표 8〉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의 준법지원인 활동 내역 현황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유가증권+코스닥		유가증권		코스닥	
	기업 수 (개사)	비율(%)	기업 수 (개사)	비율(%)	기업 수 (개사)	비율(%)
상(20개 초과)	20	7.7	19	8.3	1	3.3
중상(16개~20개)	21	8.1	19	8.3	2	6.7
중(11개~15개)	42	16.2	37	16.1	5	16.7
중하(6개~10개)	55	21.2	51	22.2	4	13.3
하(1개~5개)	87	33.5	75	32.6	12	40
미공시	35	13.5	29	12.6	6	20
합계	260	100	230	100	30	100

\* 출처: DART, KCGS

- 추가로, 준법지원조직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준법지원인의 세부 활동내역 수가 25개 이상인 공시 우수기업 상위 10개사의 사례를 검토함
- 표준준법통제기준에 의거한 준법지원인의 주요 업무를 분류 항목으로 구성함 - 준법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제14조), 준법 지원 및 점검(제15조, 제16조), 내부제보장치 운영(제18조), 정보 요청 및 관리(제20조), 법적 위험 관리 기타(제12조), 유효성 평가(제21조, 제22조) - 상위 기업 10개사 모두 준법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우에 따라 일상적인 준법 지원 및 준법 점검을 시행하고 있었음. 또한, 내부제보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3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준법통제기준에 따른 유효성 평가를 진행한 기업이 6개사로 집계됨

-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적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공시한 기업과 달리, 활동 내역에 다수의 건을 공시한 기업은 전반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9〉 준법지원인 활동 내역 공시 상위 기업 사례<sup>17)</sup>

구분	기업명	준법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준법 지원 및 점검	내부제보 장치 운영	정보 요청 및 관리	법적 위험 관리 기타	유효성 평가	활동내역 수 (계)	비고
유가증권 상장기업	A사	14	3	1	1	5	3	27	내부회계관리제도 함께 수행
	B사	52	8	1	4	8	0	73	준법지원조직 다수,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활발
	C사	9	4	2	1	12	0	28	다양한 내부제보 채널 운영
	D사	18	7	0	1	10	1	37	반부패 및 하도급 중점 준법통제
	E사	26	12	0	0	0	0	38	임직원 대상 대규모 교육 실시
	F사	19	4	0	3	27	1	54	컴플라이언스 체제 운영
	G사	17	1	0	3	22	1	44	컴플라이언스 체제 운영
	H사	10	3	0	2	19	1	35	ISO37301&ISO37001 통합 취득
	I사	14	7	0	0	3	1	25	지주사 대상 준법 점검 및 현업부서 대상 준법 교육 다수
코스닥 상장기업	J사	36	5	0	0	6	0	47	ISO37301 취득

\* 출처: DART, KCGS

### 요약 및 소고

- **(법적 의무와 준법지원인 선임)**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은 유가증권 351개사, 코스닥 86개사로 총 437개사임.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 437개사 중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은 유가증권 230개사, 코스닥 30개사로 총 260개사(59.5%)이며,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은 유가증권 121개사, 코스닥 56개사로 총 177개사(40.5%)임.

17) 각 항목에는 준법지원인의 활동내역에 따라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산입하였음

-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를 배분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 제도가 올해 시행될 예정이며<sup>18)</sup>,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운영을 위하여 우수 운영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올해 시행될 예정임<sup>19)</sup>
  - 현재 상법상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기업이 4할 이상 존재하는 상황임. 따라서 상기 내부통제 제도와 마찬가지로, 준법지원인 제도 역시 도입 취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보완책(보완 규정, 처벌 규정, 또는 인센티브 등)이 마련되어야 함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내부회계관리, 내부통제, 위험관리, 준법감시, 준법통제, 준법지원 등의 용어가 혼란스럽게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으며<sup>20)</sup>, 이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제도까지 합해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적, 제도적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한 분명한 업무분장 지침 또는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법적 분쟁과 준법지원인 선임)**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 437개사 중 지난 10년간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 있는 기업은 87개사, 발생한 적 없는 기업은 350개사임.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 있는 기업 87개사 중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상장기업은 유가증권 57개사, 코스닥 8개사로 총 65개사(74.4%)이며, 반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 없는 기업 350개사 중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상장기업은 유가증권 173개사, 코스닥 22개사로 총 195개사(55.7%)임
-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 있는 의무기업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 없는 의무기업에 비해 준법지원인 선임률이 18% 이상 높음. 준법지원인 제도는 감사나 감사위원회와 같은 업무 집행에 관한 사후 감독이 아닌 업무 수행에 관한 사전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이후가 아닌 법적 분쟁 발생 이전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준법지원인 자격)**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 중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 260개사를 대상으로 상법상 각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변호사(1호)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이 유가증권 151개사, 코스닥 20개사로 총 171개사(65.8%)임. 또한, 법학 조교수 등(2호)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은 없었으며, 법무부서 경력 등(3호)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이 유가증권 59개사, 코스닥 23.3%로 총 66개사(25.4%)로 나타남

18)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내년 말부터 금융회사 임원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12월 8일, <https://www.fsc.go.kr/no010101/81211>

19)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정책토크보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활성화 한다.”, 공정위소식, 2024년 1월 15일,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ype=1>

20) 천경훈, “부패방지과 회사법”, 『경제법연구』 제18권 2호 (2019), 113면

- 다수 기업이 상법상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음. 준법지원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가 준법지원인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준법지원인 선임 단계에서 직무 적합성을 능동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구됨
- **(준법지원인 직위)**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 중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 260개사를 대상으로 각 직위를 검토한 결과, 상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이 유가증권 98개사, 코스닥 7개사로 총 105개사(40.4%)임. 또한, 임원은 아니지만 그룹장 이상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이 유가증권 64개사, 코스닥 13개사로 총 77개사(29.6%)로 나타남
  - 준법지원인의 직위에 관하여 정해진 바는 없음. 다만, 준법지원인이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직위가 그룹장 이하 부서원인 경우 이사회 보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유연하고 적절한 준법지원인 직위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임
- **(준법지원조직 설치)**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 중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 260개사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준법지원조직이 있는 상장기업이 유가증권 220개사, 코스닥 27개사로 총 247개사(95%)임. 또한, 이 중에서 조직명이 '준법지원', '법무', '컴플라이언스'에 해당하는 경우가 유가증권 194개사, 코스닥 26개사로 총 220개사(84.6%)로 나타남
  - 준법지원인의 업무량의 적절한 분배를 위하여 준법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됨. 다만, 현실적으로 준법지원조직만을 별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규모의 기업인 경우, 준법지원인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법지원조직을 운영하여야 할 것임. 특히 감사지원조직과는 중복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준법지원인 활동)**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 중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 260개사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준법지원인 활동 내역을 공시한 상장기업이 유가증권 201개사, 코스닥 24개사로 총 225개사(86.5%)임. 또한, 준법지원인 활동 내역을 15개 초과하여 공시한 상장기업이 유가증권 38개사, 코스닥 3개사로 총 41개사(15.8%)로 조사되었으며, 준법지원인 활동 내역을 미공시하였거나 5개 이하로 공시한 상장기업이 유가증권 104개사, 코스닥 18개사로 총 122개사(46.9%)로 집계됨
  -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으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에 관한 공시를 충실히 하지 않은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준법지원인의 역할이 퇴색되지 않도록 연간 준법통제에 관한 업무를 계획하고, 상시적인 준법지원을 수행하며, 필요 시 준법감사가 수행되는 등의 준법통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i) 준법 교육, ii) 준법지원 및 준법점검, iii) 내부제보장치 운영, iv)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 v) 정보 요청 및 관리, vi) 유효성 평가 등의 활동이 수행될 수 있음

## 결론

- 준법지원인 제도는 2012년 시행 이후 큰 변화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음. 제도 시행 이후 10여 년이 지났으나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기업 10개사 중 4개사는 준법지원인을 여전히 선임하지 않는 등 준법지원인 선임률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음
- 유수의 국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적 분쟁의 발생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며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준법통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이 준법경영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외국 선진기업에는 이미 전사적 위험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준법경영에 관한 인식이 보통 또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는 준법지원인 제도 자체에 대한 미비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제도의 중첩 및 혼선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이기도 함
-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에 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필요 시 상법 개정 또는 유사 제도의 통폐합 등도 고려되어야 함. 또한, 기업 내부에서도 내부통제 및 준법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내실 있는 준법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내 상장회사 이사회 다양성과 전문성 현황(2)

## - 이사회 경력 및 역량 전문성 중심으로 -

박준성\*

- ▶ 지난 1편에 이어서 국내 상장회사의 전문성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기업 359개사, 사외이사 1407명에 대한 전문성을 경력 8개 유형과 역량 1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10개 업종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
- ▶ 우리나라 사외이사 전문성은 학계(교수) 또는 정부관료 출신의 경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량으로는 법률 또는 경영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됨. 다만, 건강관리(G25), IT(G45), 커뮤니케이션(G50)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산업 특성과 관련된 전문성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향을 보임
- ▶ 위와 같이 일부 업종에서는 사외이사 전문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외이사 전문성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선임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성의 다양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본론

#### 1) 분석 목적 및 방법

##### □ 국내 상장회사의 이사회 다양성과 전문성 현황 분석

###### ○ 분석 목적

- 국내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정 전문성에 편향되어 있지 않은지, 실제 기업 경영에 있어 감시 기능뿐만 아니라 중요한 조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 배경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 국내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다양성을 위해 특정 성별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대표할 만한 연령 다양성을 갖추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연구원, jspark@cgs.or.kr

○ 분석 방법

- 대상기업 : 2023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기업 359개사\*
  - \* 총 공시기업 368개사 중 부동산 리츠(REITS) 7개사, 상장폐지기업 2개사 제외
- 자료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사업보고서(2022년 말 기준)
- 분석내용 : (이사회 다양성)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이사 수, 성별, 출생연도, 연령 (이사회 전문성) 사외이사의 경력, 역량
- 전문성 구분 기준 : 본고에서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아래의 별도 기준에 따라 구분함

〈표 1〉 사외이사의 전문성 구분 기준

대분류	소분류	정의
경력 (8)	정부관료	정부 또는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출신
	검찰·법원	법원, 검찰의 고위공직자 출신
	정계(정치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치단체 등 출신
	학계(교수)	대학 교수 출신
	변호사	검찰·법원 출신이 아닌 변호사
	회계사	공인회계사
	동종업계	소속된 회사와 동종업계 출신
	이종업계	소속된 회사와 이종업계 출신
역량 (12)	법률	법학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금융	금융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회계	회계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세무	세무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경영	경영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경제	경제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언론	언론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인문	사회복지, 소비자, 광고, 행정 등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공학	공학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의학	의사, 의학 전공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 보유
	업계 전문성	특정 전공을 분류할 수 없지만, 업계 전문성을 인정할만한 근무기간 및 직위 경력 보유
	기타(확인불가)	전공 및 경력을 단정하기 어렵거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 업종분류 : WICS 업종분류코드 대분류 기준

〈표 2〉 업종분류 기준

업종 분류코드	업종명
G10	에너지
G15	소재
G20	산업재
G25	경기 소비재
G30	필수 소비재
G35	건강 관리
G40	금융
G45	IT
G50	커뮤니케이션 및 서비스
G55	유틸리티

## 2) 전체 사외이사의 전문성 현황

○ 이번 챕터에서는 분석대상기업 359개사, 사외이사 1407명에 대한 전문성을 경력 8개 유형과 역량 1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외이사 전문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 (분석결과 1) 전체 사외이사 전문성 현황

〈표 3〉 전체 사외이사의 전문성 현황

(단위 : 명, %)

경력	사외이사 수	비율	역량	사외이사 수	비율
<b>학계(교수)</b>	<b>478</b>	<b>33.97%</b>	<b>법률</b>	<b>293</b>	<b>20.82%</b>
정부관료	272	19.33%	경영	216	15.35%
이종업계	221	15.71%	업계 전문성	149	10.59%
회계사	111	7.89%	금융	148	10.52%
검찰/법원	100	7.11%	회계	144	10.23%
변호사	99	7.04%	공학	131	9.31%
동종업계	97	6.89%	경제	109	7.75%
정계	29	2.06%	기타	85	6.04%
-	-	-	세무	50	3.55%
-	-	-	인문	31	2.20%
-	-	-	언론	27	1.92%
-	-	-	의학	24	1.71%
합계	1407	100%	합계	1407	100%

※ 출처 : 한국ESG기준원

- <표 3>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사외이사 경력은 학계(교수) 출신이 33.97%, 정부관료 출신이 19.33%로 상위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량의 측면에서는 법률이 20.82%, 경영 15.35%, 금융 10.52%, 회계 10.23%, 경제 7.75%로 약 60%에 해당하여 전문성이 특정 출신과 분야에 편중된 경향을 보임
  - 이는 학계(교수) 출신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감독과 조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업계의 학술적 전문성이 뛰어나고, 대외적 및 사회적 명망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 경영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론과 실무의 괴리 등 현실적 조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함
  - 정부관료 출신의 경우, 최근 기업 경영활동에서 법률 및 행정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부처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언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방패막이나 대관 로비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함
  - ESG경영이 확대됨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관련 규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자문과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법률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향이 뚜렷함
  - 경영, 금융, 회계, 경제 분야를 경영·경제로 공통으로 볼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단순 기업 존속을 위한 경영의 관점에서 자금조달, 금융투자, 해외사업진출 등 경영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경영·경제 분야의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분석결과 2) 전체 사외이사 전문성 현황 - 경력에 따른 구분

<표 4> 전체 사외이사의 전문성 현황 - 경력에 따른 구분

(단위 : 명, 개사, %)

1) 학계(교수)					
사외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110	30.64%	0%	110	30.64%
<b>1</b>	<b>109</b>	<b>30.36%</b>	1%이상~20%미만	9	2.51%
2	76	21.17%	20%이상~30%미만	55	15.32%
3	45	12.53%	30%이상~40%미만	48	13.37%
4	13	3.62%	40%이상~50%미만	19	5.29%
5	6	1.67%	<b>50% 이상</b>	<b>118</b>	<b>32.87%</b>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2) 정부관료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183	50.97%	0%	183	50.97%	
<b>1</b>	<b>111</b>	<b>30.92%</b>	1%이상~20%미만	18	5.01%	
2	43	11.98%	<b>20%이상~30%미만</b>	<b>63</b>	<b>17.55%</b>	
3	17	4.74%	30%이상~40%미만	31	8.64%	
4	3	0.84%	40%이상~50%미만	5	1.39%	
6	2	0.56%	50% 이상	59	16.43%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3) 이종업계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201	55.99%	0%	201	55.99%	
<b>1</b>	<b>112</b>	<b>31.20%</b>	1%이상~20%미만	21	5.85%	
2	34	9.47%	<b>20%이상~30%미만</b>	<b>56</b>	<b>15.60%</b>	
3	9	2.51%	30%이상~40%미만	29	8.08%	
4	2	0.56%	40%이상~50%미만	3	0.84%	
6	1	0.28%	50% 이상	49	13.65%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4) 회계사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264	73.54%	0%	264	73.54%	
<b>1</b>	<b>83</b>	<b>22.84%</b>	1%이상~20%미만	20	5.57%	
2	11	3.06%	<b>20%이상~30%미만</b>	<b>35</b>	<b>9.75%</b>	
3	2	0.56%	30%이상~40%미만	28	7.80%	
			40%이상~50%미만	2	0.56%	
			50% 이상	10	2.79%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5) 검찰/법원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269	74.93%	0%	269	74.93%	
<b>1</b>	<b>80</b>	<b>22.28%</b>	1%이상~20%미만	18	5.01%	
2	10	2.79%	<b>20%이상~30%미만</b>	<b>41</b>	<b>11.42%</b>	
-	-	-	30%이상~40%미만	17	4.74%	
-	-	-	40%이상~50%미만	2	0.56%	
-	-	-	50% 이상	12	3.34%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6) 변호사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268	74.65%	0%	268	74.65%
<b>1</b>	<b>84</b>	<b>23.40%</b>	1%이상~20%미만	21	5.85%
2	6	1.67%	<b>20%이상~30%미만</b>	<b>38</b>	<b>10.58%</b>
3	1	0.28%	30%이상~40%미만	20	5.57%
-	-	-	40%이상~50%미만	3	0.84%
-	-	-	50% 이상	9	2.51%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7) 동종업계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285	79.39%	0%	285	79.39%
<b>1</b>	<b>56</b>	<b>15.60%</b>	1%이상~20%미만	12	3.34%
2	14	3.90%	<b>20%이상~30%미만</b>	<b>24</b>	<b>6.69%</b>
3	3	0.84%	30%이상~40%미만	18	5.01%
4	1	0.28%	40%이상~50%미만	2	0.56%
-	-	-	50% 이상	18	5.01%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8) 정계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332	92.48%	0%	332	92.48%
<b>1</b>	<b>25</b>	<b>6.96%</b>	1%이상~20%미만	9	2.51%
2	2	0.56%	<b>20%이상~30%미만</b>	<b>9</b>	<b>2.51%</b>
-	-	-	30%이상~40%미만	4	1.11%
-	-	-	40%이상~50%미만	1	0.28%
-	-	-	50% 이상	4	1.11%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 출처 : 한국ESG기준원

- <표 4>에서는 사외이사 전문성을 경력에 따라 학계(교수), 정부관료, 이종업계, 회계사, 검찰/법원, 변호사, 동종업계, 정계 구분하였으며 상위 3개 경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함
- 학계(교수) 출신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은 69.36%이며, 전체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의 수는 1명인 경우가 30.36%로 가장 높음
  - 전체 사외이사의 규모(사외이사 수) 대비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의 비중을 살펴보면, 학계(교수) 출신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 359개사 중 118개사로 32.87%를 차지하고 있음

- 정부관료 출신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은 49.03%이며, 전체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의 수는 1명인 경우가 30.92%로 가장 높음
  - 전체 사외이사의 규모(사외이사 수) 대비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관료 출신이 2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기업이 359개사 중 63개사로 17.5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16.43%로 확인됨
- 이종업계 출신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은 45.01%이며, 전체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의 수는 1명인 경우가 31.20%로 가장 높음
  - 전체 사외이사의 규모(사외이사 수) 대비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의 비중을 살펴보면, 이종업계 출신이 2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기업이 359개사 중 56개사로 1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13.65%로 확인됨
- 이외에는 회계사 출신이 26.46%이며, 변호사 출신 25.35%, 검찰/법원 출신 25.07%, 동종업계 출신 20.61%, 정계 출신이 7.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의 수는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 (분석결과 3) 전체 사외이사 전문성 현황 - 역량에 따른 구분

〈표 5〉 전체 사외이사의 전문성 현황 - 역량에 따른 구분

(단위 : 명, 개사, %)

1) 법률					
사외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145	40.39%	0%	145	40.39%
<b>1</b>	<b>151</b>	<b>42.06%</b>	1%이상~20%미만	20	5.57%
2	50	13.93%	<b>20%이상~30%미만</b>	<b>82</b>	<b>22.84%</b>
3	10	2.79%	30%이상~40%미만	52	14.48%
4	3	0.84%	40%이상~50%미만	10	5.79%
-	-	-	50% 이상	50	13.93%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2) 경영					
사외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207	57.66%	0%	207	57.66%
<b>1</b>	<b>107</b>	<b>29.81%</b>	1%이상~20%미만	26	7.24%
2	28	7.80%	<b>20%이상~30%미만</b>	<b>45</b>	<b>12.53%</b>
3	16	4.46%	30%이상~40%미만	36	10.03%
5	1	0.28%	40%이상~50%미만	9	2.51%
-	-	-	50% 이상	36	10.03%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3) 업계 전문성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245	68.25%	0%	245	68.25%
<b>1</b>	<b>85</b>	<b>23.68%</b>	1%이상~20%미만	16	4.46%
2	24	6.69%	<b>20%이상~30%미만</b>	<b>33</b>	<b>9.19%</b>
3	4	1.11%	30%이상~40%미만	30	8.36%
4	1	0.28%	40%이상~50%미만	4	1.11%
-	-	-	50% 이상	31	8.64%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4) 금융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239	66.57%	0%	239	66.57%
<b>1</b>	<b>95</b>	<b>26.46%</b>	1%이상~20%미만	16	4.46%
2	23	6.41%	<b>20%이상~30%미만</b>	<b>52</b>	<b>14.48%</b>
3	1	0.28%	30%이상~40%미만	29	8.08%
4	1	0.28%	40%이상~50%미만	1	0.28%
-	-	-	50% 이상	22	6.13%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5) 회계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231	64.35%	0%	231	64.35%
<b>1</b>	<b>114</b>	<b>31.75%</b>	1%이상~20%미만	32	8.91%
2	12	3.34%	<b>20%이상~30%미만</b>	<b>52</b>	<b>14.48%</b>
3	2	0.56%	30%이상~40%미만	31	8.64%
-	-	-	40%이상~50%미만	2	0.56%
-	-	-	50% 이상	11	3.06%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6) 공학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258	71.87%	0%	258	71.87%
<b>1</b>	<b>74</b>	<b>20.61%</b>	1%이상~20%미만	14	3.90%
2	26	7.24%	<b>20%이상~30%미만</b>	<b>42</b>	<b>11.70%</b>
3	1	0.28%	30%이상~40%미만	20	5.57%
-	-	-	40%이상~50%미만	3	0.84%
-	-	-	50% 이상	22	6.13%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7) 경제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277	77.16%	0%	277	77.16%
<b>1</b>	<b>58</b>	<b>16.16%</b>	1%이상~20%미만	16	4.46%
2	21	5.85%	<b>20%이상~30%미만</b>	<b>35</b>	<b>9.75%</b>
3	3	0.84%	30%이상~40%미만	12	3.34%
-	-	-	40%이상~50%미만	4	1.11%
-	-	-	50% 이상	15	4.18%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8) 기타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297	82.73%	0%	297	82.73%
<b>1</b>	<b>48</b>	<b>13.37%</b>	1%이상~20%미만	11	3.06%
2	9	2.51%	20%이상~30%미만	17	4.74%
3	4	1.11%	30%이상~40%미만	12	3.34%
7	1	0.28%	40%이상~50%미만	1	0.28%
-	-	-	<b>50% 이상</b>	<b>21</b>	<b>5.85%</b>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9) 세무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313	87.19%	0%	313	87.19%
<b>1</b>	<b>42</b>	<b>11.70%</b>	1%이상~20%미만	10	2.79%
2	4	1.11%	<b>20%이상~30%미만</b>	<b>18</b>	<b>5.01%</b>
-	-	-	30%이상~40%미만	16	4.46%
-	-	-	40%이상~50%미만	1	0.28%
-	-	-	50% 이상	1	0.28%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10) 인문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331	92.20%	0%	331	92.20%
<b>1</b>	<b>25</b>	<b>6.96%</b>	1%이상~20%미만	8	2.23%
2	3	0.84%	<b>20%이상~30%미만</b>	<b>12</b>	<b>3.34%</b>
-	-	-	30%이상~40%미만	1	0.28%
-	-	-	40%이상~50%미만	1	0.28%
-	-	-	50% 이상	3	0.84%
합계	359	100%	합계	359	100%

11) 언론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331	92.20%	0%	331	92.76%
<b>1</b>	<b>25</b>	<b>6.96%</b>	1%이상~20%미만	7	1.95%
2	3	0.84%	<b>20%이상~30%미만</b>	<b>12</b>	<b>3.34%</b>
-	-	-	30%이상~40%미만	5	1.39%
-	-	-	40%이상~50%미만	0	0%
-	-	-	50% 이상	2	0.56%
합계	359	100%	합계	357	100%

12) 의학					
사외 이사 수	해당 기업 수	비율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 비율	해당 기업 수	비율
0	340	94.71%	0%	340	94.71%
<b>1</b>	<b>15</b>	<b>4.18%</b>	1%이상~20%미만	0	0%
2	3	0.84%	<b>20%이상~30%미만</b>	<b>10</b>	<b>2.79%</b>
3	1	0.28%	30%이상~40%미만	4	1.11%
-	-	-	40%이상~50%미만	2	0.56%
-	-	-	50% 이상	3	0.84%
합계	359	100%	합계	357	100%

※ 출처 : 한국ESG기준원

- <표 5>에서는 사외이사 전문성을 역량에 따라 법률, 경영, 업계전문성, 금융, 회계, 공학, 경제, 기타, 세무, 인문, 언론, 의학 구분하였으며 상위 3개 역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함
- 법률 전문성을 갖춘 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은 59.61%이며, 전체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의 수는 1명인 경우가 42.06%로 가장 높음
  - 전체 사외이사의 규모(사외이사 수) 대비 해당 역량을 갖춘 이사의 비중을 살펴보면 법률 전문성을 갖춘 자가 2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기업이 359개사 중 82개사로 2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이상 차지하는 기업은 13.93%로 확인됨
- 경영 전문성을 갖춘 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은 42.34%이며, 전체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의 수는 1명인 경우가 29.81%로 가장 높음
  - 전체 사외이사의 규모(사외이사 수) 대비 해당 역량을 갖춘 이사의 비중을 살펴보면 경영 전문성을 갖춘 자가 2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기업이 359개사 중 45개사로 1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이상 차지하는 기업은 10.03%로 확인됨
- 회계 전문성을 갖춘 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은 35.65%이며, 전체 사외이사 중 해당 경력을 갖춘 이사의 수는 1명인 경우가 31.75%로 가장 높음
  - 전체 사외이사의 규모(사외이사 수) 대비 해당 역량을 갖춘 이사의 비중을 살펴보면 회계

전문성을 갖춘 자가 2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기업이 359개사 중 52개사로 14.48%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외에는 금융 전문성을 갖춘 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은 33.43%, 업계 전문성 31.75%, 공학 전문성 28.13%, 경제 전문성 22.84%, 기타 전문성 17.27%, 세무 전문성 12.81%, 인문 및 언론 전문성 각각 7.80%, 의학 전문성 5.29% 순으로 나타남

### 3) 업종 구분에 따른 사외이사 전문성 현황

- 이번 챕터에서는 분석대상기업 359개사, 사외이사 1407명에 대한 전문성을 WICS 업종분류코드에 따른 10개 업종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 (분석결과 4) 업종별 사외이사 전문성 현황 - 경력에 따른 분류

〈표 6〉 업종별 사외이사 전문성 현황 - 경력에 따른 분류

(단위 : 명, %)

분류 코드	G10	G15	G20	G25	G30	G35	G40	G45	G50	G55
업종명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건강 관리	금융	IT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학계 (교수)	8 (21.05%)	64 (37.43%)	112 (31.73%)	74 (29.13%)	23 (23.96%)	27 (47.37%)	74 (34.91%)	46 (45.54%)	32 (42.11%)	18 (36.73%)
정부 관료	8 (21.05%)	35 (20.47%)	73 (20.68%)	48 (18.90%)	22 (22.92%)	5 (8.77%)	48 (22.64%)	18 (17.82%)	6 (7.89%)	9 (18.37%)
이종 업계	9 (23.68%)	25 (14.62%)	65 (18.41%)	51 (20.08%)	16 (16.67%)	8 (14.04%)	21 (9.91%)	11 (10.89%)	12 (15.79%)	3 (6.12%)
회계사	3 (7.89%)	12 (7.02%)	22 (6.23%)	25 (9.84%)	8 (8.33%)	7 (12.28%)	17 (8.02%)	8 (7.92%)	5 (6.58%)	4 (8.16%)
검찰/법원	0 (0.00%)	13 (7.60%)	36 (10.20%)	16 (6.30%)	9 (9.38%)	3 (5.26%)	10 (4.72%)	4 (3.96%)	7 (9.21%)	2 (4.08%)
변호사	5 (13.16%)	10 (5.85%)	26 (7.37%)	20 (7.87%)	9 (9.38%)	3 (5.26%)	9 (4.25%)	7 (6.93%)	4 (5.26%)	6 (12.24%)
동종 업계	5 (13.16%)	9 (5.26%)	11 (3.12%)	15 (5.91%)	7 (7.29%)	2 (3.51%)	32 (15.09%)	6 (5.94%)	7 (9.21%)	3 (6.12%)
정계	0 (0.00%)	3 (1.75%)	8 (2.27%)	5 (1.97%)	2 (2.08%)	2 (3.51%)	1 (0.47%)	1 (0.99%)	3 (3.95%)	4 (8.16%)
합계	38 (100%)	171 (100%)	353 (100%)	254 (100%)	96 (100%)	57 (100%)	212 (100%)	101 (100%)	76 (100%)	49 (100%)

※ 출처 : 한국ESG기준원

- <표 6>은 업종별 사외이사 전문성 현황을 경력에 따른 분류로 분석한 표로서, 업종에 따른 사외이사 전문성(경력) 현황 분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학계(교수) 출신의 사외이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후 정부관료, 이종업계 출신 순으로 나타남
  - 학계(교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는 건강관리(G25)으로 47.37%를 차지하였으며, IT(G45)은 45.4%, 커뮤니케이션(G50)은 42.11% 순으로 확인됨. 이는 건강관리(G25) 업종은 바이오, 매디컬 등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여 관련 연구실적이 뛰어나고, 명망이 높은 의학 및 공학 교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비슷하게 IT와 커뮤니케이션 업종 모두 높은 기술력을 필요하는 분야이므로 공학 전공의 교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추론됨
  - 특히 건강관리(G25)와 커뮤니케이션(G50) 업종에서 정부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10% 미만으로, 타 업종에서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해당 업종에서의 사외이사 선임 시 산업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에너지(G10)와 금융(G40) 업종에서는 동종업계 출신이 15% 내외로, 타 산업에서 5% 미만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높은 비중인 것으로 확인됨. 이는 에너지와 금융은 규제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므로, 해당 업계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타 산업에 비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추측됨

□ (분석결과 5) 업종별 사외이사 전문성 현황 - 역량에 따른 분류

〈표 7〉 업종별 사외이사 전문성 현황 - 역량에 따른 분류

(단위 : 명, %)

분류 코드	G10	G15	G20	G25	G30	G35	G40	G45	G50	G55
업종명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건강 관리	금융	IT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법률	5 (13.16%)	<b>42</b> <b>(24.56%)</b>	<b>83</b> <b>(23.51%)</b>	<b>50</b> <b>(19.69%)</b>	<b>25</b> <b>(26.04%)</b>	<b>10</b> <b>(17.54%)</b>	35 (16.51%)	<b>17</b> <b>(16.83%)</b>	<b>17</b> <b>(22.37%)</b>	<b>9</b> <b>(18.37%)</b>
금융	6 (15.79%)	14 (8.19%)	31 (8.78%)	20 (7.87%)	5 (5.21%)	4 (7.02%)	<b>45</b> <b>(21.23%)</b>	12 (11.88%)	9 (11.84%)	2 (4.08%)
재무 회계	5 (13.16%)	14 (8.19%)	29 (8.22%)	26 (10.24%)	10 (10.42%)	9 (15.79%)	25 (11.79%)	13 (12.87%)	7 (9.21%)	6 (12.24%)
세무	2 (5.26%)	6 (3.51%)	18 (5.10%)	13 (5.12%)	5 (5.21%)	0 (0.00%)	5 (2.36%)	0 (0.00%)	0 (0.00%)	1 (2.04%)
경영	3 (7.89%)	<b>29</b> <b>(16.96%)</b>	<b>52</b> <b>(14.73%)</b>	<b>50</b> <b>(19.69%)</b>	8 (8.33%)	5 (8.77%)	<b>39</b> <b>(18.40%)</b>	<b>17</b> <b>(16.83%)</b>	11 (14.47%)	2 (4.08%)
경제	<b>8</b> <b>(21.05%)</b>	9 (5.26%)	30 (8.50%)	12 (4.72%)	2 (2.08%)	3 (5.26%)	27 (12.74%)	7 (6.93%)	1 (1.32%)	<b>10</b> <b>(20.41%)</b>
인문	0 (0.00%)	6 (3.51%)	7 (1.98%)	4 (1.57%)	4 (4.17%)	3 (5.26%)	2 (0.94%)	1 (0.99%)	2 (2.63%)	2 (4.08%)
언론	1 (2.63%)	2 (1.17%)	8 (2.27%)	6 (2.36%)	2 (2.08%)	1 (1.75%)	2 (0.94%)	1 (0.99%)	3 (3.95%)	1 (2.04%)
IT	0 (0.00%)	0 (0.00%)	1 (0.28%)	1 (0.39%)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공학	0 (0.00%)	24 (14.04%)	29 (8.22%)	17 (6.69%)	10 (10.42%)	1 (1.75%)	12 (5.66%)	<b>19</b> <b>(18.81%)</b>	11 (14.47%)	6 (12.24%)
의학	0 (0.00%)	0 (0.00%)	2 (0.57%)	2 (0.79%)	3 (3.13%)	<b>15</b> <b>(26.32%)</b>	2 (0.94%)	0 (0.00%)	0 (0.00%)	0 (0.00%)
업계 전문성	<b>7</b> <b>(18.42%)</b>	18 (10.53%)	34 (9.63%)	36 (14.17%)	<b>16</b> <b>(16.67%)</b>	2 (3.51%)	10 (4.72%)	8 (7.92%)	<b>13</b> <b>(17.11%)</b>	5 (10.20%)
기타	1 (2.63%)	7 (4.09%)	29 (8.22%)	17 (6.69%)	6 (6.25%)	4 (7.02%)	8 (3.77%)	6 (5.94%)	2 (2.63%)	5 (10.20%)
합계	38 (100%)	171 (100%)	353 (100%)	254 (100%)	96 (100%)	57 (100%)	212 (100%)	101 (100%)	76 (100%)	49 (100%)

※ 출처 : 한국ESG기준원

- <표 7>은 업종별 사외이사 전문성 현황을 역량에 따른 분류로 분석한 표로서, 이에 따르면 업종별 사외이사 전문성(역량)은 전반적으로 법률과 경영 전문성을 갖춘 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일부 업종에서는 차이가 있음
  - 에너지(G10)와 유틸리티(G55) 업종에서는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비율이 20%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해 높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에너지와 유틸리티 산업이 기간산업으로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거시경제의 흐름 등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G40)은 금융 분야 21.23%, 경영 18.40%, 경제 12.74%로 약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듯이 사외이사 선임 시 산업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다만 최근 금융산업의 핀테크 및 IT화에 따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가 없는 것은 보완할 부분이라 사료됨
  - 건강관리(G35)는 의학 분야 출신이 26.32%로 타 산업에서는 0%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의 특성 상 높은 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의학 교수나 그에 준하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보여짐
  - IT(G45)와 커뮤니케이션(G50)은 공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각각 18.81%, 14.47%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확인됨. IT와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높은 기술력을 요하고, 기술 트렌드 변화가 빠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사료됨

## 결론 및 시사점

- **(사외이사 전문성 현황)** 분석 대상기업의 사외이사 전문성을 살펴본 결과, 학계(교수) 출신 또는 정부관료 출신, 법률 또는 경영 전문가 등 특정 경력과 역량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사외이사로서 학계(교수) 및 정부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이는 학술적 전문성이나 사회적 명망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업 경영에 대한 경험 부족과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방패막 또는 대관 로비 창구의 역할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존재함
  - 역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 경영, 회계 등 분야를 선호하고 있으나, 건강관리(G25), IT(G45), 커뮤니케이션(G50)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의학이나 공학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해당 업종은 타 산업에 비해 전문적 지식과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만큼,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사외이사는 경영진에 대한 감독·견제의 기능뿐만 아니라 조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나,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집단과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독특한 지배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사외이사가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

- 실제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결격사유<sup>1)</sup>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sup>2)</sup>,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11제2항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요하는 규정<sup>3)</sup> 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 그러나 사외이사는 독립성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내경영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회사가 효율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기업 경영환경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사외이사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앞서 1편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제3차 개정(2023.9.11.)<sup>4)</sup>에서 이사회 평가 시에 지속가능한 경영, 위험관리 등과 같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함께 검토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다양성 확대)** 1편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정부 규제의 최소한 수준만 준수할 뿐 성별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다양성도 특정 나이대(50~60년대생)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됨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제3차 개정(2023.9.11.)<sup>5)</sup>에서도 이사의 선임과정에서 성별 다양성, 전문적 경험, 연령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유럽연합(EU)에서도 사외이사 성별 균형 개선에 관한 지침(2022.11.23.)<sup>6)</sup>을 발표하여, 2026년 6월30일까지 여성(과소 대표되는 성별)이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중 최소 40%, 전체 이사 중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외이사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이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으며, 2017년부터 202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성별 다양성과 연령 다양성 및 전문성의 다양성이 확보된 기업일수록 ESG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음<sup>7)</sup>
  - 이처럼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마련되고 국내외 연구가 이루어지는 만큼, 특정 성별·연령에 집중된 현상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국적 및 인종의 다양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1) 상법 제382조제3항 :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2) 안태식(2013), “사외이사의 독립성”,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23집 제2호 pp67-101

3)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제1항제2호 :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4) 출처 :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2023.9.11.)

5) 출처 :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2023.9.11.)

6) 출처 : DIRECTIVE (EU) 2022/23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November 2022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and related measures(2022.11.23.)

7) 최중원(2023), “이사회 다양성이 ESG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사외이사 성별 다양성, 국적 다양성, 연령 다양성, 전문성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3권 3호 pp1-30

# Global News

## 1.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최신 변동사항 및 시사점

양희원\*

- 2023년 7월 최종안이 확정·발표된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가 일부 수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시행됨. 이에 관한 일부 내용을 2023년 9월 KCGS Report 제13권 9호<sup>1)</sup>에서 다루었음. 본 문서에서는 해당 리포트 발간 시점 이후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과 시사점을 소개함
- 주요 변동사항 (★ 표시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사항)
  - ① 산업 섹터별 ESRS(SS-ESRS; Sector Specific-ESRS) 도입 2년 연기 (의결 완료, 2023.10.17.) ★
    -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2023년 10월 17일 의결을 통해 Article 29b(1)을 개정하여 기존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산업 섹터별 ESRS 도입을 2년 연기하여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기로 함<sup>2)</sup>
  - ② 공시기업 기준 수정 (의결완료, 2023.10.17.) ★
    - EC는 2023년 10월 17일 의결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공시기업 기준을 수정하여 공시 의무가 덜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장함<sup>3)</sup>

### 〈공시기업 기준 전후 비교〉

기업 규모	자산 기준		순매출액 기준	
	전	후	전	후
초소규모 (Micro-undertakings)	€ 350,000	€ 450,000	€ 700,000	€ 900,000
소규모 (Small)	€ 4,000,000	€ 5,000,000	€ 8,000,000	€ 10,000,000
중규모 (Medium-sized)	€ 20,000,000	€ 25,000,000	€ 40,000,000	€ 50,000,000
대규모 (Large)	€ 20,000,000	€ 25,000,000	€ 40,000,000	€ 50,000,000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선임연구원, 미국회계사, hwyang@cgs.or.kr

1)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동향”, 한지혜 선임연구원 (2023.09.27.)

2) Proposal for a DECIS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the time limits for the adoption of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for certain sectors and for certain third-country undertakings, EUROPEAN COMMISSION, (2023.10.17.)

3)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912-Adjusting-SME-size-criteria-for-inflation\\_en](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912-Adjusting-SME-size-criteria-for-inflation_en), EUROPEAN COMMISSION, (2023.10.17.)

③ ESRS XBRL<sup>4)</sup> Taxonomy 도입 (승인 완료, 2023.12.05.)

-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이하EFRAG)는 2023년 12월 5일에 ESRS XBRL 분류체계 초안에 대한 승인을 완료함<sup>5)</sup>

④ 중소기업 적용 ESRS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 (현장 적용 시험 진행 중, ~2023.01.31.)

- EFRAG는 2023년 11월 29일에 상장된 중소기업(LSME; Listed Small-Medium Enterprise, 이하 LSME) 공시기준과 비상장 중소기업(VSME; Voluntary ESRS for non-list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이하 VSME)의 자발적 공시기준 초안을 각각 발표함<sup>6)</sup>
- LSME와 VSME 공시기준 관련 현장 적용 시험(Field Test)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진행함

⑤ EFRAG 실행가이드 초안 공개 (의견 수렴 중, ~2024.02.02.) ★

- EFRAG는 2023년 12월 22일에 세가지 영역(중대성 평가, 벨류체인, 데이터포인트)에 대한 실행 가이드 초안을 발표함<sup>7)</sup>

〈EFRAG 실행가이드 초안 구성〉

코드	영역	링크
EFRAG IG 1	중대성평가	링크
EFRAG IG 2	벨류체인	링크
EFRAG IG 3	데이터포인트	링크1, 링크2

- 위 실행가이드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4년 2월 2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현장 적용 시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기업 부담의 경감·증가·유지 요인이 혼재된 상황

① 기업 부담 경감 요인 : 단계적 도입 정책

- EFRAG는 산업 섹터별 ESRS 도입을 연기하고 공시기업 기준을 수정하는 등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조기 도입되는 것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신중하게 검토함. 이에 기업의 실무환경을 고려하여 ESRS가 연착륙하도록 단계적 도입 정책(Phasing Policy)을 펼치고 있음

4)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확장성 경영보고언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정보가 확장,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든 기업보고용 국제 표준화 언어  
 5) <https://www.efrag.org/Meetings/2305101050307353/EFRAG-SR-TEG-Meeting-05-December-2023>, EFRAG, (2023.12.05.)  
 6) <https://www.efrag.org/Meetings/2311131059281397/EFRAG-SRB-Meeting-29-November-2023>, EFRAG, (2023.11.29.)  
 7) <https://www.efrag.org/News/Public-471/Publication-of-the-3-Draft-EFRAG-ESRS-IG-documents-EFRAG-IG-1-to-3->, EFRAG, (2023.12.22.)

② 기업 부담 증가 요인 : 세부 공시사항 신규 도입

- 한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기준 도입과 세부 실행가이드 도입 또한 연달아 추진하며 점차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루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일부 증가할 수 있음

③ 기업 부담 유지 요인 : ISSB와 다른 접근법에 대한 대비 필요

- 다만, ESRS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중중대성 평가나 합리적 확신을 요구하는 의견 수준 등에는 변화가 없음.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대응 중인 ISSB와 다른 접근·대응 방법이 필요한 분야임. 따라서 유럽 내 지속가능성 공시가 필요한 기업은 ISSB와 ESRS와의 차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EFRAG에서 부여한 연착륙 기간에 적극적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참고) ESRS의 개요, 연혁, 구성 및 ISSB와 주요 차이점

- 개요: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에서 도입한 지속가능성 요소에 대한 공시 기준
- 연혁: 2023년 7월에 최종안이 확정·발표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 적용·시행되었음. 따라서 2025년부터 FY2024에 대한 실제 공시가 이뤄지게 됨
- 구성 : 총 12개 표준(Standards)
  - 공통 표준 2개 : 일반 원칙(ESRS 1), 일반 공시사항(ESRS2)
  - 주제별 표준 10개 : 환경(E1~E5; 기후변화, 오염, 수자원 및 해양자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사회(S1~S4; 기업 자체 노동력, 가치사슬 내 근로자, 영향권 내 지역사회,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지배구조(G1; 사업 수행방식)

ISSB와 주요 차이점

구분	ESRS	비교	ISSB
정보이용자 범위	모든 이해관계자 (투자자 포함)	⊃	투자자
중대성 기준	영향력 관점 (재무적 관점 포함)	⊃	재무적 관점
이중중대성 채택 여부	O	≠	X
의견 수준	합리적 확신 <sup>8)</sup> (Reasonable Assurance)	≠	필수 아님

8) 최초 도입 시 제한된 확신(Limited Assurance)을 요구하나 차차 합리적 확신 수준으로 전환 예정

### 2. EU 금융당국, 금융상품 공시규제에 새로운 사회적 지표 제안

정선아\*

- 유럽금융당국(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은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을 보완하는 세부규칙(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sup>1)</sup>
-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요구하는 SFDR은 2021년 3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부규칙인 RTS에 따른 공시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SFDR은 2018년 EU가 발표한 지속가능금융행동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sup>2)</sup>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으며, ▲금융 기업의 그린워싱 방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증진등을 목표로 제정되었음
  - EU 역내 은행, 연기금, 자산운용회사 등의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금융기업의 ESG 투자규모 및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SFDR의 세부 규칙인 RTS는 금융상품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방법론으로, RTS의 의무공시 사항 18개는 피투자기업·국가·부동산자산 투자 부문별로 구분되어 적용됨
  - (피투자기업) 기후·환경, 사회근로자 등과 관련한 14개 공시항목으로 구성됨
  - (국가·부동산자산 투자) 온실가스, 화석연료 관련 환경지표와 국제규율 미준수 관련 사회지표 등 4개 공시항목으로 구성됨
- RTS 최종안의 주요 변경사항 I : PAI 지표 변경사항<sup>3)</sup>
  - ① 주요 내용 1 : PAI 사회 지표 확장
    - PAI 필수 사회적 지표 중 ①담배 재배 및 생산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노출 지표, ②적정 임금 미만을 받는 종업원 공시 지표가 신규 추가되었음
    - 이외에도 “성별임금 격차에 대한 공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의 상세지표에 대한 내용 등이 수정되었음

---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연구원, sac@cgs.or.kr

1) ESMA, 2024.01.19., “ESAs put forward amendments to sustainability disclosures for the financial sector”, <https://www.esma.europa.eu/press-news/esma-news/esas-put-forward-amendments-sustainability-disclosures-financial-sector>

2) 2018년 3월 EU에서 발표한 ‘지속가능금융행동계획’은 10대 계획으로 구성되며, 그 중 두 가지 계획인 ‘기관투자자와 자산 운용사의 지속가능성 의무 규정’과 ‘지속가능성 공시 및 회계 규정 강화’는 EU 탄소노미, CSRD, SFDR 등이 제정되는 주요 근거가 됨

3) ESA, 2023.12.4., 「Final Report on draft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 ② 주요 내용 2 : PAI 환경 지표 수정

- “탄소배출량 및 온실가스 집약도”지표에 대한 산식이 ‘EU 투자 백만 건당 표시되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과 ‘투자 대상 기업당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로 산출되도록 변경함
- 이외에도 최종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강도”지표에 대한 단위를 MWh에서 GW로 변경함

## □ RTS 최종안의 주요 변경사항II : DNSH 원칙 공시 및 보고 방식 간소화

### ① 주요 내용 1 : DNSH 원칙 공시

- 무해원칙(Do No Significant Harm, DNSH)은 각 금융 상품이 설정한 환경목표를 달성하되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음을 입증하는 원칙이며, 금융상품의 지속가능투자가 DNSH 원칙을 준수하도록 PAI 지표를 공시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지속가능한 투자가 DNSH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상품이 공시하기로 결정한 PAI 지표에 대한 기준과 한계점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함

### ② 주요 내용 2 : 공시 템플릿 간소화

- 소비자와 투자자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템플릿에 포함되는 문구를 간소화하고, 정보의 반복을 방지하는 작업을 진행함
- 금융상품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대시보드를 도입하였으며, ①지속가능한 투자, ②텍소노미 분류, ③PAI 지표, ④GHG 배출감소 목표와 같은 4가지 필수요소가 포함되어 공시됨

□ 국내의 경우, 2023년 10월 금융감독원이 「ESG펀드<sup>4)</sup>에 대한 공시기준」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펀드에도 적용되어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sup>5)</sup>

- 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해외 주요국의 공시규제 현황 및 국내기업의 ESG 공시기준 도입 상황 등에 따라 공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임

4) ①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②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임을 표방하는 펀드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10.6., 「ESG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